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26 - 098호

영등포구립도서관 보조인력 블라인드 채용

영등포구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업무를 지원할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.

2026년 7월

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위원장

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❍ 단기계약직 1명

직군/분야	근무지	인원	급여	자격사항 및 우대사항
단기계약직/바리스타 (월~금, 09:00~13:30)	여의샛강도서관	1명	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 (시간급 12,121원)	1. 바리스타자격증 소지자(우대)

응시자격

❍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9조(채용자격기준) 별표2

❍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자 격 요 건	
단기계약직	1. 카페(식음료제조) 및 판매 경험자(필수) 2. 바리스타자격증 소지자(우대) 3. 도서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험자(우대)

❍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❍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0조(정년)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

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❍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❍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※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증빙서류 제출(확인) 시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

근무조건(근무일시 및 근무기간)

응시직군	내 용
단기계약직	○ 근무기간: 2026.8.7.~11.6. ○ 근무일시 - 월~금 09시~13시30분 - 근무시간 4시간 / 휴게시간 30분
- 근무시간은 도서관 운영 및 내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

보수사항

구 분	내 용
단기계약직	○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 ○ 기타사항은 (재)영등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함

응시원서 접수

❍ 접수기간 : **2026. 7. 13.(월) ~ 7. 20.(월)**

❍ 접수방법 : **mythmr@ydpcf.or.kr 이메일 접수**

▶ 서류접수시 반드시 날인을 확인하고 제출

▶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▶ 접수기간 내 7월 20일(월)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인정

▶ 발송 제목은 반드시 「**보조인력 채용 지원서 ㅇㅇㅇ**」 기재하고, 파일명은「**단기계약직_바리스타_홍길동**」으로 기재

❍ 행정사항 : 임의양식 제출 및 블라인드 채용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 제외

❍ 서류발표 : **2026. 7. 24.(금) 예정 (※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)**

❍ 면접일시 : **2026. 7. 29.(수) 예정 (※ 변경될 수 있음_대상자 개별안내)**

❍ 면접장소 : 서류합격자 공고문 참조

❍ 기타문의 : **영등포문화재단 도서관정책기획팀 (문의☎ 02-2165-7709)**

전형방법

❍ 1차: 서류심사

• 평가기준

평 가 부 문	배 점
해당분야 실무경력	15
해당분야 교육사항	15
자격·면허증 소지여부	15
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 성실도	25
채용분야 직무수행 능력 및 적합성	30
합 계	**100**

• 선발인원: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**3배수 이상 범위**에서 합격자 결정

※ 단,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❍ 2차: 면접시험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

• 평가기준

구분	평가부문	배점
전문가적 능력	1.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	20
	2.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	
전략적 리더십	1. 비젼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	20
	2.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	
변화관리 능력	1.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	20
	2.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	
조직관리 능력	1.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	20
	2. 업무개선능력	
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1.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	20
	2.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	
합 계		**100**

• 선발인원: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 선발

※ 단,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서류 및 면접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최종합격자 발표

❍ 최종합격자 발표: **2026. 7. 31.(금) 예정**

2026. 8. 7.(금)임용

❍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(인재채용) 공고

※ 최종합격자 발표(공고)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)

제출서류(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)

- ❍ 응시자 자격요건 자가 점검표 1부.
- ❍ 입사지원서 1부.
- ❍ 자기소개서 1부.
- ❍ 경력기술서 1부.
- ❍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
※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거)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기타사항

- ❍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전체 채용절차·과정에서 학력, 연령, 출신지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를 금함
- ❍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
- ❍ 구비서류의 기재착오, 누락 및 연락불능, 지원일자,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, 성명 및 (인)에 도장 또는 서명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,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
- ❍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❍ 차순위자는 예비합격자로 하며 최초 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,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할 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 시험 없이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
- ❍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고, 모집인원 이하거나 임용된 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
- ❍ 채용 시 일정기간(6개월 이내)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,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10조 제16조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❍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응시서류의 반환이 가능함(응시자 본인의 반환신청서 날인 필)
- ❍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,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(합격자 발표일포함)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이의제기 가능 (mythmr@ydpcf.or.kr)
  -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,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
  -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,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
- ❍ **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 관련사항으로 채용 합격 시, 모든 임용자는 반드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**

❍ **최종 임용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시하는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**